



제 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

검 토 보 고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근거 신설 등〉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79호)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003호)
- 문금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164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2200927)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2
II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2202003)	5
1. 제안경위	5
2. 제안이유	5
3. 주요내용	6
III . 문금주의원 대표발의(2202164)	9
1. 제안경위	9
2. 제안이유	9
3. 주요내용	10
VI . 제정안 관련 제21대국회 논의 경과	11
VII . 검토의견	12
1. 법 제정 배경과 체계	12
2. 기관 의견	17
3. 법률 제정 필요성	25
4.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29
(1)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 신설 ...	29
(2) 한우산업발전협회의 설치 근거 신설	33

(3) 한우의 수급조절 근거 신설	36
(4) 도축·출하장려금의 지급 근거 신설	39
(5)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근거 신설	41
(6) 한우 자급률 목표 설정 및 최저생산비 보장 방안 강구 근거 신설 ...	44
(7)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실시 근거 신설	46
(8) 소규모한우농가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49
(9) 기업의 한우 생산업 진출 시 상생협력 방안 마련 의무 규정	52
(10) 한우품평회 개최 근거 신설	55

I. 어기구의원 대표발의(2200779)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어기구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4. 6. 21.

다. 회 부 일 : 2024. 6. 24.

2. 제안이유

한우산업은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와 미국, 호주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음. 이에 더해 한·미 FTA에 따른 소고기 관세율 인하 일정에 따라 2026년부터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예정으로 현재의 생산기반 약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붕괴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세계유일의 유전자원인 한우는 축산인들에게는 주요 소득원이자, 국민들에게는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산업으로, 이러한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우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우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영개선자금 등의 지원을 통해 한

우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우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우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생산·사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우산업 현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함(안 제8조).

마. 국가는 한우농가의 탄소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축순환농업으로의 전환,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9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한우수급정책을 수립하고,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 및 부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 토종한우 유전자원 보호 및 한우의 수급불안 해소를 위하여 자급률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저생산비 보장 방안을 강구해야 함(안 제15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부산물을 식용 또는 사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8조).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한우유통구조의 개선 및 확충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20조).

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3조).

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대표브랜드를 선정·육성하기 위한 한우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II. 이원택의원 대표발의(2202003)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7. 19.

다. 회 부 일 : 2024. 7. 22.

2. 제안이유

한우는 오랜 기간 한국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유지해온 중요한 가축 유전자원이자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한우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하지만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및 미국, 호주, 유럽 등과의 자유 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2026년 관세화 제로 이후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사육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더하여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바, 이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 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 협의회를 둠(안 제9조).
- 라. 국가는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0조).
-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중장기 한우수급 정책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도록 하며,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안 제11조).
-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

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5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자금 지원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한우유통구조의 개선 및 다양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20조).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3조).

타. 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진출하려는 경우 생산자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0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문금주의원 대표발의(2202164)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문금주의원 등 23인

나. 제 안 일 : 2024. 7. 23.

다. 회 부 일 : 2024. 7. 24.

2. 제안이유

한우는 오랜 기간 한국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유지해온 중요한 가축 유전자원이자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한우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하지만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및 미국, 호주, 유럽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2026년 관세화 제로 이후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사육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더하여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바, 이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 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 협의회를 둠(안 제9조).
- 라. 국가는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0조).
-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중장기 한우수급 정책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도록 하며,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안 제11조).
-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

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자금 지원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한우유통구조의 개선 및 다양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19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2조).

카. 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진출하려는 경우 생산자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3조).

IV. 제정안 관련 제21대국회 논의 경과

□ 제정안과 관련된 제21대국회 발의 제정안의 논의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이원택 의원안, '22.7.) 및 한우산업기본법안(홍문표의원안, '22.12.) 발의
-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 의결
 -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4. 18.)
 -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본회의(2024. 5. 28.)
-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서 제출 (2024. 5. 29.)

※ 제21대국회 회의 세부경과

회의명	회의일자	회의 결과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 8. 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3. 5. 11.	상정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3. 6. 22.	상정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3. 9. 20.	상정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3. 11. 16.	상정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3. 11. 22.	상정, 심사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3. 12. 12.	상정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3. 12. 20.	상정, 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	2024. 1. 15.	상정, 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 2. 1.	상정, 소위심사보고, 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3회 국회(임시회 · 폐회중)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 4. 18.	본회의 부의 요구 의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본회의	2024. 5. 28.	상정, 심사, 의결(원안가결)

V. 검토의견

1. 법 제정 배경과 체계

□ 한우산업은 2001년 소고기 수입자유화 및 미국, 호주, 유럽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와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2026년 관세화제로¹⁾ 이후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사육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아울러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제정안은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한우의 수급 조절, 도축·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한우농가가 저탄소 생산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취지로 보임.

5개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²⁾

1) 2026년부터 미국산 소고기, 2028년부터 호주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임.

2) (여기구의원안) 총 5장, 25조의 조문, 부칙 1개 조문
(이원택의원안) 총 4장, 26조의 조문, 부칙 1개 조문
(문금주의원안) 총 4장, 25조의 조문, 부칙 1개 조문

【 제정안별 구성 체계 】

어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문금주의원안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등)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한우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2장 한우산업의 육성>	<제2장 한우산업의 육성>
제5조(한우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3장 한우산업의 육성>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제7조(연구·개발) 제8조(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한우산업발전협의회) 제10조(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제7조(연구·개발) 제8조(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한우산업발전협의회) 제10조(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제7조(한우산업발전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8조(한우산업발전협의회) 제9조(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탄소 저감 정책의 추진) 제10조(연구·기술개발)	제11조(한우의 수급조절 등) 제12조(도축 및 출하 장려금) 제13조(경영비용 부담 완화 대책) 제14조(경영개선자금 지원) 제15조(자급률 확보) 제16조(교육 지원) 제17조(소규모 한우농가의 컨설팅 지원 등) 제18조(부산물의 활용) 제19조(소비촉진) 제20조(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제21조(도축·가공시설의 구축 등 지원) 제22조(민간 한우유통업체 육성) 제23조(수출기반조성) 제24조(한우 품평회 개최)	제11조(한우의 수급조절) 제12조(도축·출하장려금) 제13조(경영비용 부담 완화) 제14조(경영개선자금 지원) 제15조(교육 지원) 제16조(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제17조(부산물의 활용) 제18조(소비촉진) 제19조(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제20조(도축·가공시설 지원) 제21조(민간 한우유통업체 육성) 제22조(수출기반조성) 제23조(기업의 생산업 진출 시 상생협력 촉진)
<제4장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제3장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제3장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제11조(한우의 수급조절 등) 제12조(도축 및 출하 장려금) 제13조(경영비용 부담 완화 대책) 제14조(경영개선자금 지원) 제15조(자급률 확보) 제16조(교육 지원) 제17조(소규모 한우농가의 컨설팅 지원 등) 제18조(부산물의 활용) 제19조(소비촉진) 제20조(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제21조(도축·가공시설의 구축 등 지원) 제22조(민간 한우유통업체 육성) 제23조(수출기반조성) 제24조(한우 품평회 개최)	제11조(한우의 수급조절) 제12조(도축·출하장려금) 제13조(경영비용 부담 완화) 제14조(경영개선자금 지원) 제15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제16조(교육 지원) 제17조(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제18조(부산물의 활용) 제19조(소비촉진) 제20조(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제21조(도축·가공시설 지원) 제22조(민간 한우유통업체 육성) 제23조(수출기반조성) 제24조(기업의 생산업 진출 시 상생협력 촉진)	제11조(한우의 수급조절) 제12조(도축·출하장려금) 제13조(경영비용 부담 완화) 제14조(경영개선자금 지원) 제15조(교육 지원) 제16조(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제17조(부산물의 활용) 제18조(소비촉진) 제19조(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제20조(도축·가공시설 지원) 제21조(민간 한우유통업체 육성) 제22조(수출기반조성) 제23조(기업의 생산업 진출 시 상생협력 촉진)
<제5장 보칙>	<제4장 보칙>	<제4장 보칙>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1장은 “한우”, “한우농가” 및 “한우산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고, 한우산업 발전과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한우산업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제2장(여기구의원안 제2장 및 제3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우산업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한우농가 탄소저감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음.³⁾

제3장(여기구의원안 제4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우수급정책을 수립하고, 도축·출하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과 소규모한우농가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한우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 수출기반 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제4장(여기구의원안 제5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 한우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이 금품 수수 등의 불법행위

3) 한우농가 탄소저감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의무화 관련하여 윤준병의원안은 제3장에서 규정

를 한 경우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한우의 자급률 확보”와 관련하여 어기구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고, “기업의 생산업 진출 시 상생협력 촉진”과 관련하여 이원택·문금주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한우 품평회 개최” 및 “송아지생산안정사업”과 관련하여 각각 어기구의원안 및 이원택의원안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별 주요내용 비교 】

구 분	어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문금주의원안
한우의 자급률 확보	자급률 목표 설정 및 최저생산비 보장방안 강구 의무 규정	-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	종합적인 컨설팅 지원	종합적인 컨설팅 지원 및 자금지원 시 우대조치	
기업의 한우 생산업 진출 시	-	농식품부장관 승인 및 상생협력방안 마련 규정	
한우품평회	한우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한우품평회 개최 규정	-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	「축산법」 상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이관	-

2. 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지원법」 제정보다는 「축산법」 체계 내에서(「축산법」 개정) 「한우지원법」에 규정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입장임.⁴⁾

(한우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근거 신설)⁵⁾

-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축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과제가 포함되도록 「축산법」 개정안 제4조의2(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3(지역축산업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동 조문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므로, 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임.

(한우산업발전협의회 근거 신설)⁶⁾

- 중장기 한우수급 정책, 적정 사육규모 관리 등 관련 현안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축산법」 개정안 제32조의4(축산물수급조절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동 조문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므로, 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임.

4) 이와 관련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안, 제2201921호)이 '24.7.18일 발의되었음.

5) (문금주 의원안) 제5조, (여기구 의원안) 제5조, (이원택 의원안) 제5조

6) (문금주 의원안) 제9조, (여기구 의원안) 제8조, (이원택 의원안) 제9조,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 근거 신설)⁷⁾

- 한우농가의 탄소저감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도록 「축산법」 개정안 제4조의2(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항 제7호 및 제10호 등에 동 조문의 취지를 반영하였으므로, 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임.

(한우의 수급조절 근거 신설)⁸⁾

- 중장기 한우수급 정책을 수립하고, 한우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미래 한우수급 전망을 분석·관리하는 한편, 이를 농가에 보급하는 등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축산법」 개정안 제4조의2(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항 제5호 및 제11호, 제32조의4(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2항 제3호 가목 등에 동 조문의 취지를 반영하였으므로, 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임.

(도축·출하장려금 지원 근거 신설)⁹⁾

- 한우수급 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일정 기간 사육한 한우를 도축·출하할 경우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축산법」 개정안 제31조의2(가축의 생산·출하 안정 사업) 제1항에 동 조문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므로, 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임.

7) (문금주 의원안) 제10조, (여기구 의원안) 제9조, (이원택 의원안) 제10조

8) (문금주 의원안) 제11조, (여기구 의원안) 제11조, (이원택 의원안) 제11조

9) (문금주 의원안) 제12조, (여기구 의원안) 제12조, (이원택 의원안) 제12조

(경영개선자금 지원 근거 신설)¹⁰⁾

□ 경영개선자금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비롯하여 모든 농업인에게 지원되고 있음.

○ 다만, 이와 별도로 필요시 한우농가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축산법」 개정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항, 제4조의2(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항 제12호에 동 조문의 취지를 반영하였으므로, 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근거 신설)¹¹⁾

□ 소규모 한우에 대해 경영·기술·재무 등에 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축산법」 개정안 제33조의4(중소축산업자 육성 및 지원), 제4조의2(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항 제12호에 동 조문의 내용과 그 취지를 반영하였으므로, 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한우 자급률 목표 설정 및 최저생산비 보장 방안 강구 근거 신설)¹²⁾

□ 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최저생산비를 보장할 경우 과도한 예산수반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한우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10) (문금주 의원안) 제14조, (여기구 의원안) 제14조, (이원택 의원안) 제14조,

11) (문금주 의원안) 제16조, (여기구 의원안) 제17조, (이원택 의원안) 제17조,

12) (여기구 의원안) 제15조

○ 다만, 소고기 자급률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설정·고시하고 이를 달성
하기 위한 계획을 기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국산 소고기 자급률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축산법」 개정안 제4조의2(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
2항 제11호에 동 조문의 내용을 반영하였다는 의견임.

(기업의 한우 생산업 진출 시 상생협력 방안 마련 의무 규정)¹³⁾

□ 시장경쟁체제 하에서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농업분야에 기업의 진입을 법률로 제한하는 사례도 없음.

○ 또한 타 축종에서는 이미 기업들이 축산업에 진출하여 영업활
동¹⁴⁾을 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기업의 축산업 참여는 투자 확대, 규모화 등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적 영향¹⁵⁾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
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13) (이원택 의원안) 제24조, (문금주 의원안) 제24조

14) 돼지, 닭 사육·판매업 분야 기업 진출현황 : 하림(대기업, '21년 매출 11조), 사조(중견기업, 3조),
이지바이오(중견기업, 1,339억원) 등

15) 긍정적 효과 : (하림) 계열사인 세티, 애그리로보텍을 통해 축산악취 저감·정화 장치, ICT장비
등을 개발, (CJ) 농가 컨설팅 역량 강화를 위해 돈돈팜(계열사)에서 질병·사양관리 교육 시행('17년)

(2) 기획재정부

(도축·출하장려금 지원사업 추진 근거 신설)¹⁶⁾

- ☐ 「축산법」 제44조(기금의 재원) 및 제47조(기금의 용도)에 따라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사료의 수급 지원 등의 용도로 축산발전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어 동 조항에 따라 관련 지원사업 등을 이미 실시하고 있고, 타 축종과의 형평성 고려할 때, 별도의 조항 신설의 필요성이 없음.

(경영개선자금 지원 근거 신설)¹⁷⁾

- ☐ 「축산법」 제44조(기금의 재원) 및 제47조(기금의 용도)에 따라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사료의 수급 지원 등의 용도로 축산발전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어 동 조항에 따라 농가 경영 지원 등을 이미 실시하고 있고, 타 축종과의 형평성 고려할 때, 별도의 조항 신설의 필요성이 없음.

(한우 자급률 목표 설정, 최저생산비 보장 방안 강구 근거 신설)¹⁸⁾

- ☐ 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저 생산비 도입 시 한우 생산 증가 유인으로 인한 공급과잉 등 수급불안 문제의 발생이 가능하고, 과도한 재정소요 및 타 축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반대함.

16) (문금주 의원안) 제12조, (여기구 의원안) 제12조, (이원택 의원안) 제12조

17) (문금주 의원안) 제14조, (여기구 의원안) 제14조, (이원택 의원안) 제14조,

18) (여기구 의원안) 제15조

(3) 행정안전부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근거 신설)¹⁹⁾

- ☐ 한우수급 정책,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등에 대한 자문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정책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회 활용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고도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됨.²⁰⁾

(4) 공정거래위원회

(중장기 한우 수급조절 정책 수립 및 관리 근거 신설)²¹⁾

- ☐ 일반적으로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상품의 생산·출고를 제한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3호) 위반(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함.

이와 관련하여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는 축산물 수급조절시 공정위와의 협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우의 수급조절 시에도 관련 협의회의 심의뿐만 아니라 공정위와의 협의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

19) (문금주 의원안) 제9조, (여기구 의원안) 제8조, (이원택 의원안) 제9조

20) 「축산법」에 따라 설치된 유사위원회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축산발전시책 심의),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축산물수급조절, 축종별 수급안정 대책 등 심의)는 운영실적 저조로 폐지대상 위원회로 분류되어 정비 추진 중

21) (문금주 의원안) 제11조, (여기구 의원안) 제8조, (이원택 의원안) 제9조

(5) 전국한우협회

(한우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근거 신설)²²⁾

- 타축종과는 다른 토종유전자원으로서 한우와 관련하여 유전자 보호, 개량, 증식, 보전, 육성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한우산업발전협의회 근거 신설)²³⁾

- 농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축산물수급조절협회의 경우 위원회로서의 성격·기능이 자문으로만 국한되어 있어 실제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있어 그 역할이 한정적임. 따라서,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수급조절 관련 정책 등 주요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 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므로, 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 근거 신설)²⁴⁾

- 농가의 자율적 정책 유인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한 선택형 공익직불금과의 연계를 통해 정책 시너지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22) (문금주 의원안) 제5조, (여기구 의원안) 제5조, (이원택 의원안) 제5조

23) (문금주 의원안) 제9조, (여기구 의원안) 제8조, (이원택 의원안) 제9조

24) (문금주 의원안) 제10조, (여기구 의원안) 제9조, (이원택 의원안) 제10조

(도축·출하장려금 지원 근거 신설)²⁵⁾

- ☐ 「축산법」에는 수급조절에 따른 지원근거가 없어 농가들의 수급조절을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므로, 한우법을 통해 수급조절을 위한 장려금 지급 및 요건·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한우 자급률 목표 설정 및 최저생산비 보장 방안 강구 근거 신설)²⁶⁾

- ☐ 한우의 경우 타축종과는 다른 세계유일무이한 토종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에서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함. 또한, 가격이 내려갈 경우 농가의 경영악화와는 무관하게 자급률만 높아질 수 있어, 최소 최저생산비는 지킬 수 있는 선에서 자급률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기업의 한우 생산업 진출 시 상생협력 방안 마련 의무 규정)²⁷⁾

- ☐ 닭·오리·돼지 등 축산업이 기업의 자본에 휘둘리며 계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정안에 따라 소규모 한우농가들을 보호하고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25) (문금주 의원안) 제12조, (여기구 의원안) 제12조, (이원택 의원안) 제12조

26) (여기구 의원안) 제15조

27) (이원택 의원안) 제24조, (문금주 의원안) 제24조

3. 법률 제정 필요성

- FTA 등 시장개방 이후 한우농가는 자급률 저하와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음.

향후 한·미 FTA에 따른 소고기 관세율 인하 일정에 따라 2026년부터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예정임.

【 한·미 FTA에 따른 연도별 소고기 수입관세율 현황 】

(단위 :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40.0	37.3	34.6	32.0	29.3	26.6	24.0	21.3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18.6	16.0	13.0	10.6	8.0	5.3	2.6	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2024. 8. 20. 제출)

- 향후에도 CPTPP²⁸⁾ 등 지속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²⁹⁾,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22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분야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30%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³⁰⁾

이를 위해서는 한우농가의 탄소 감축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28)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다양한 분야의 제품에 대한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협력체제

29) 전국한우협회는 CPTPP 가입 시 15년간 한육우 2조 880억원, 한우 1조 9,890억원의 생산감소를 추정하고 있음

30)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30% 감축(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2.02.06.)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한우수급조절, 도축·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한우농가의 탄소저감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심으로 종합적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현재 「축산법」에서 축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우산업에 대해서만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정부는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축산법」에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농가소득 증대 및 축산물 수급 안정화 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임.

따라서,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할 경우, 현행 「축산법」을 개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임.³¹⁾

반면, 현행 법령 체계로는 제정안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각종

31) 이와 관련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안, 제2201921호)이 '24.7.18일 발의되었음.

지원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정안과 같이 관련 정책을 구체화·의무화 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한우협회 등의 제정안 찬성 의견도 존재함.

또한, 이와 관련하여 양봉·말·곤충·양잠 등에 관한 개별법³²⁾도 존재하므로, 품목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³³⁾

- 둘째, 다른 축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한우산업만을 위한 지원법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축산물 생산액】

구 분	생산액(단위 : 10억원)	비중(단위 : %)
돼지	9,650	48.5
한우	6,029	30.3
닭	2,581	13.0
오리	1,076	5.4
육우	305	1.5
염소	167	0.8
젖소	58	0.3
사슴	24	0.1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2024. 8. 20. 제출), 2022년 가축 기준

32)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말산업 육성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3)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품목의 경우 산업육성 차원에서 별도 법령을 제정하여 운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주요 농축산물과 비교 시 생산방식과 산물의 유통 및 가격결정 체계가 특수(낙농·양봉 등)하고, 낮은 생산소비 저변으로 산업 활성화가 시급한 특이 품목(차·화훼·곤충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의견 제시

축산 분야 가운데 한우산업에 대해서만 특별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고,
 다른 축종 분야에서도 법 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³⁴⁾

반면, FTA로 인한 시장개방 이후 한우산업의 피해가 비교적
 높았으며, 주요 소고기 수입국가에 대한 관세 철폐가 예정³⁵⁾되
 어 있음.

【 주요 축산물 순수익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한우 번식우 마리당 순수익	-365	-1,071	-1,424	-1,465	-585	-192	266	234	214	303	518	563	-409	-1,276
한우 비육우 마리당 순수익	739	-1,166	-916	-573	-293	316	988	133	-57	-76	58	292	-689	-1,426
젖소 마리당 순수익	1,810	1,508	1,629	1,768	2,422	2,809	2,844	2,747	2,736	2,701	2,661	2,434	1,529	1,731
비육돈 마리당 순수익	40	143	9	-28	84	97	82	86	48	6	47	68	57	23
산란계 마리당 순수익	-4.0	-1.1	-5.9	-0.3	4.1	2.3	1.8	11.8	-2.2	-1.8	2.5	19.6	7.3	4.8
육계 10마리당 순수익	3.2	1.4	0.9	0.6	1.1	0.6	0.2	1.4	1.2	1.8	0.3	0.6	2.6	1.6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2024. 8. 20. 제출)

따라서,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한우산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함.

□ 따라서, 제정안의 입법 여부에 대해서는 한우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 필요성, 현행 제도 및 법률 체계와의 관계 여부, 다른 축
 종과의 형평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4) 실제로, 제21대국회에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홍문표의원안), 한돈산업의 경
 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원택의원안)이 발의되었으나 별도의 논의를 거치지 못하
 고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음.

35) 2026년부터 미국산 소고기, 2028년부터 호주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임.

4.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1)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 신설

□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여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제5조(한우산업 육성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기후변화에 따른 한우의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방안 3. 탄소중립 실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개선 지원방안 4. 한우 유통·수출 진흥 및 소비촉진 방안 5. 한우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6. 한우 유전자 보존 및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기후변화에 따른 한우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방안 3.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개선 지원방안 4. 한우 유통·수출 진흥 및 소비촉진 방안 5. 한우가격의 안정화 방안 6. 한우 유전자 보존 및 국내 환경에 맞는 종모우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기후변화에 따른 한우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방안 3.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개선 지원방안 4. 한우유통·수출 진흥 및 소비촉진 방안 5. 한우가격의 안정화 방안 6. 한우 유전자 보존 및 국내 환경에 맞는 종모우

어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문금주의원안
국내 환경에 맞는 종모우 생산에 관한 사항 7. 「축산법」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 한우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의 추진에 관한 사항 8. 한우의 환경친화적 생산체계 구축 및 경축순환의 활성화 방안 9.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10. 그 밖에 한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생산에 관한 사항 7.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 한우 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의 추진에 관한 사항 8. 한우분야 자원 재순환 및 경축순환 활성화 방안 9.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한우 분야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10. 그 밖에 한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생산에 관한 사항 7.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 한우 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의 추진에 관한 사항 8. 한우분야 자원 재순환 및 경축순환 활성화 방안 9.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한우 분야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10. 그 밖에 한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여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문금주의원안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기본방향의 설정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과 동 계획의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 「축산법」 제3조³⁶⁾는 축산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제정안은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현행 「축산법」

36)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보다 구체화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우산업 발전만을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2) 한우산업발전협회의 설치 근거 신설

□ 제정안은 한우산업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한우산업발전협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제8조(한우산업발전협회) ① 한우산업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를 둔다. 1.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 2.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의 규모 관리 3.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 생산 기술개발 및 보급 4. 자원재순환을 통한 사료자원 보급 5. 한우의 유통 및 수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9조(한우산업발전협회) ① 한우산업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를 둔다. 1.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 2.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의 규모 관리 3.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 생산 기술개발 및 보급 4. 자원재순환을 통한 사료자원 보급 5. 한우의 유통 및 수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9조(한우산업발전협회) ① 한우산업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를 둔다. 1.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 2.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의 규모 관리 3.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 생산 기술개발 및 보급 4. 자원재순환을 통한 사료자원 보급 5. 한우의 유통 및 수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어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문금주의원안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2. 전국한우협회를 대표하는 사람 3. 한우협동조합연합회를 대표하는 사람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5.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임원 6. 그 밖에 한우산업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③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우수급조절협의회, 한우수출지원협의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2. 전국한우협회를 대표하는 사람 3. 한우협동조합연합회를 대표하는 사람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5.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임원 6. 그 밖에 한우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③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우수급조절협의회, 한우수출지원협의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2. 전국한우협회를 대표하는 사람 3. 한우협동조합연합회를 대표하는 사람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5.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임원 6. 그 밖에 한우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③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우수급조절협의회, 한우수출지원협의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한우산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결정과정에 한우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 「축산법」 제4조³⁷⁾는 “축산발전심의위원

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은 현행 「축산법」의 축산발전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보다 협의회 구성원 및 심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동 협의회가 구성될 경우 한우산업 관련 정책의 전문성 강화, 한우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한우수급 정책,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등에 대한 자문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정책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회 활용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고도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³⁸⁾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7) 「축산법」 제4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 ①제3조에 따른 축산발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관계 공무원
2. 생산자·생산자단체의 대표
3. 학계 및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등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8) 행정안전부 의견 제시

(3) 한우의 수급조절 근거 신설

-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우수급정책을 수립하고, 한우 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자료를 한우농가에 제공하도록 하며, 5년마다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임.

어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제11조(한우의 수급조절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이하 “한우수급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한우의 수급조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 심의를 거쳐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이하 “한우수급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한우의 수급조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 심의를 거쳐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이하 “한우수급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수급정책 수립 시 한우 사육규모에 따라 환경·사회적 책임을 차등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수급정책 수립시 한우 사육규모별 환경·사회적 책임 차등부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수급정책 수립시 한우 사육규모별 환경·사회적 책임 차등부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한우수급 등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을 한우농가에 제공함으로써 자율적인 수급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한편,

5년마다 한우수급 상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한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한우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수급에 여러 변수들이 관련되어 있어, 한우농가가 오랜 기간 한우가격 불안정에 시달려왔음을 고려할 때, 제정안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수급조절 정책을 수립하여 한우농가의 경영을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 「축산법」 제3조³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⁴⁰⁾에 따라 한

39)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농림업관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

우를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관측을 실시하여 품목별 수급 동향 및 전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제정 실익이 적다는 의견⁴¹⁾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농림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4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제시

(4) 도축·출하장려금의 지급 근거 신설

- 제정안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기간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축·출하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제12조(도축 및 출하 장려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도축·출하장려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도축·출하장려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도축·출하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한우농가가 한우의 출하시기나 도축물량 등을 조절하도록 하여 적정한 한우수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절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현재 도축·출하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통해 지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규모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충분한 예산지원이 이

루어지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축·출하장려금의 지원규모를 통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적정한 한우의 수급을 도모하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축산법」 제3조⁴²⁾에서 축산물의 수급조정·가격안정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이미 있으며,

「축산법」 제47조⁴³⁾에 따른 축산발전기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⁴⁴⁾에 따른 축산자조금을 통해서도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므로, 별도 제정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⁴⁵⁾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2)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3) 「축산법」

제47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44)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자조금의 용도) ①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45) 농림축산식품부 및 기획재정부 의견 제시

(5)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근거 신설

-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대해 일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제14조(경영개선자금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질병 또는 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 및 부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이하 “경영개선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우농가의 소재지 및 사육두수 2. 한우의 사육 방법 3. 경영개선의 개요 및 기본계획 4. 경영개선계획의 시행	제14조(경영개선자금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질병 또는 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이하 “경영개선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우농가의 소재지 및 사육두수 2. 한우의 사육 방법 3. 경영개선의 기본계획 및 개요 4. 경영개선계획의 시행	제14조(경영개선자금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질병 또는 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이하 “경영개선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우농가의 소재지 및 사육두수 2. 한우의 사육 방법 3. 경영개선의 기본계획 및 개요 4. 경영개선계획의 시행

어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시기 및 기간 5. 그 밖에 경영개선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타당성 검토, 통보의 절차·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기 및 기간 5. 그 밖에 경영개선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타당성 검토, 통보의 절차·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기 및 기간 5. 그 밖에 경영개선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타당성 검토, 통보의 절차·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경영상태가 열악한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수립한 한우농가에 한해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여 한우생산기반의 위축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FTA 등 시장개방 이후 한우농가의 수익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한우농가를 위한 자금 지원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한우 부문 순수익 현황 】⁴⁶⁾

(단위 : 천원)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한우 번식우 마리당 순수익	-365	-1,071	-1,424	-1,465	-585	-192	266	234	214	303	518	563	-409	-1,276
한우 비육우 마리당 순수익	739	-1,166	-916	-573	-293	316	988	133	-57	-76	58	292	-689	-1,426
젖소 마리당 순수익	1,810	1,508	1,629	1,768	2,422	2,809	2,844	2,747	2,736	2,701	2,661	2,434	1,529	1,731
비육돈 마리당 순수익	40	143	9	-28	84	97	82	86	48	6	47	68	57	23
산란계 마리당 순수익	-4.0	-1.1	-5.9	-0.3	4.1	2.3	1.8	11.8	-2.2	-1.8	2.5	19.6	7.3	4.8
육계 10마리당 순수익	3.2	1.4	0.9	0.6	1.1	0.6	0.2	1.4	1.2	1.8	0.3	0.6	2.6	1.6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2024. 8. 20. 제출)

다만, 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⁴⁷⁾에 따라 농업인에 대한 경영개선자금⁴⁸⁾이 이미 지원되고 있고, ② 단순히 한우농가의 소득금액과 부채기준에 따라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경우 농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③ 다른 농업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⁴⁸⁾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6)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마리당 소득(총 매출액에서 사육비를 제외한 금액)의 경우 번식우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다 2023년에 적자를 기록했으며, 비육우는 '10년 이후 계속 흑자를 기록하다 2023년에야 적자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이익을 올리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47)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지원) ①정부는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그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은 2001년까지 1조 1천억원을 지원하며,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2년 거치한 후 3년 분할하여 상환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9조에 따른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상환 연기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경우에 그가 지원받은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은 약정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여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제5조의2(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①정부는 재해, 가축질병, 병해충, 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한다.

48)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제시

(6) 한우 자급률 목표 설정 및 최저생산비 보장 방안 강구 근거 신설

-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식량안보, 토종한우 유전자원 보호 및 한우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자급률⁴⁹⁾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저생산비 보장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여기구의원안

제15조(자급률 확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 토종한우 유전자원 보호 및 한우의 수급불안 해소를 위하여 자급률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저생산비 보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한우’의 경우 타축종과는 다르게 세계유일무이한 토종자원이므로, 국가 차원에서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한우는 쌀과 더불어 농촌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므로, 농업인의 소득증진 및 산업 측면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내산 소고기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한우의 가격이 내려갈 경우 농가의 경영 악화와는 무관하게 자급률만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⁵⁰⁾도 있음.

49) 한 나라의 전체 식량소비량에서 자국산 식량이 차지하는 비율

50) 전국한우협회 의견 제시

따라서, 한우의 자급률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한우농가가 받을 수 있는 경영적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해 최저생산비 보장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최저생산비를 보장할 경우 공급 확대에 따른 만성적인 수급불안 및 과도한 예산 수반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한우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의견⁵¹⁾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최저생산비 보장을 위해서는 최저생산비의 개념, 산출 과정 등 관련 사항에 관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5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제시

(7)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실시 근거 신설

- 제정안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택의원안

제15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제9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받으려는 송아지 생산농가는 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참여 자격
2. 참여기간·참여방법 및 참여절차
3.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4.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자금조성 및 관리
5. 그 밖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는 송아지 생산 농가에게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한도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원택의원안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총 지급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될 때에는 그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예산액

2.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해당 연도의 보조금 최소 허용한도액

□ 제정안은 현행 「축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조항을 「한우지원법」에서 규정하도록 이관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보임.

「한우지원법」 제정 시 이와 관련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또한 「한우지원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한우산업만을 위한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모든 축산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고 효율적인 법 운영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축산법」을 유지·보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⁵²⁾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2)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제시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개요 】

① 도입배경

- '90년대 중후반 무역개방화 및 경기침체* 등으로 한우사육 규모가 급감**함에 따라 한우생산기반 안정을 위해 동 제도 도입('98)

* '95년 WTO 출범, '97년 IMF 사태, '01년 소고기 수입 개방

** 한육우 사육규모: ('96) 284만 마리 → ('01) 141 (한우는 '03년 이후 구분 가능)

- 법적근거: 축산법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생산·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제4조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한다.

② 사업개요

-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발동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보전금) 동 제도에 가입한 농가에게 지급(20~30만원 내외)

* 발동 기준가격은 '11년까지 경영비 이상 수준에서 책정(자가노동비 등 반영)

< '00~'08년 기준가격 현황 및 책정 사례 >

(단위 : 천원)

구분	'00	'01	'04	'06	'07	'08
기준가격	900	1,200	1,260	1,300	1,550	1,650
경영비	791	787	1,006	1,079	1,171	1,527
생산비	1,401	1,443	1,945	2,079	2,142	2,467

※ '07년(1,550천원) : '06년 경영비(1,079)+'06년 자가노동비(384)+물가상승률(2.4%)+농가 불안심리 감안(52)

※ '08년(1,650천원) : '07년 기준가격+물가상승률(3.3%)+농가불안심리 감안(50)

③ 현행 발동기준('12년 조정)

- (발동기준) 기준가격(송아지 거래가격) 185만원 이하 및 가임암소 110만마리 미만
- (보전금액) 발동시 가임암소 마릿수*에 따라 마리당 10~40만원 지원

※ 기준가격 이하 하락시기의 직전년도말 가임암소수(통계청 가축동향)

가임암소(만마리)	90미만	90~100미만	100~110미만
보전금(만원/마리)	40	30	1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2024. 8. 20. 제출)

(8) 소규모한우농가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한우농가에 대해 컨설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한우농가에 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제17조(소규모 한우농가의 컨설팅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지, 생계비 및 한우산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한우농가(이하 “소규모 한우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한 방역을 위하여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거주, 생계, 한우산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자금지원 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의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6조(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거주, 생계, 한우산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자금지원 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의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한우농가에 경영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⁵³⁾함으로써 소규모한우농가의 경영 상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방역체계구축을 통해 소규모한우농가의 가축질병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소규모 농가일수록 상대적으로 수익구조가 열악하고, 축사 위생 관리도 뒤떨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경영 악화 및 질병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한우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⁵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⁵⁵⁾에 따라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컨설팅과 재정지원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과,

②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⁵⁶⁾에 따라 3년마다 가축전염병

53) 이원택·문금주의원안은 자금지원 시 우대조치도 규정

54)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자조금의 용도) ①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축산업자, 소비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중도매인등과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5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경영·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시행 중이며, 소규모 농가를 비롯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방역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⁵⁷⁾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7)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제시

(9) 기업의 한우 생산업 진출 시 상생협력 방안 마련 의무 규정

- 제정안은 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진출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생산자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택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제24조(기업의 생산업 진출 시 상생협력 촉진) ① 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진출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생산자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기업의 생산업 진출 시 상생협력 촉진) ① 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진출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생산자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정안은 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진출하려는 경우 한우농가와 협력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규모 한우농가를 보호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한우 생산업에 기업 자본이 진입할 경우 소규모 축산농가들의 기반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고려할 때,

제정안에 따라 소규모 한우농가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로 보임.

다만, 현재 농업분야에 기업의 진입을 법률로 제한하는 사례가 없고, 돼지·닭 등 타 축종에서는 이미 기업들이 축산업에 진출하여 영업활동⁵⁸⁾을 하고 있음.

따라서, 기업의 한우 생산업 진출 시 상생협력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⁵⁹⁾

또한, 2010년 1월 「축산법」 개정 시 일정 규모 이상 양돈·양계 업계에 대기업을 참여 제한을 폐지⁶⁰⁾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8) 돼지, 닭 사육·판매업 분야 기업 진출현황 : 하림(대기업, '21년 매출 11조), 사조(중견기업, 3조), 이지바이오(중견기업, 1,339억원) 등

59)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자단체(한우자조금)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기업의 한우사육 분야 진입 실태 조사(2021년)' 결과 현재도 기업의 한우 사육업 진입 제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사육하는 한우의 비중이 전체 한우 사육마리수의 1.9% 수준으로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60) 「축산법」 [법률 제9952호] : 2010.1.25. 일부개정 및 시행(제27조 삭제)

제27조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사육 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사육 규모를 정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0) 한우품평회 개최 근거 신설

-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우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대표브랜드를 선정·육성하기 위한 한우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여기구의원안

제24조(한우 품평회 개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대표브랜드를 선정·육성하기 위한 한우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우 품평회 개최·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한우의 경우 국내 토종 유전자원 중 하나이므로, 국가에서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우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대표브랜드를 선정·육성하기 위한 한우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한우 품평회의 경우 이미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에 따라 그와 유사한 행사를 오래전부터 한우 개량 및 생산자단체 주관으로 개최⁶¹⁾해 오고 있어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낮아 보인다는 의견⁶²⁾도 고려할 필요가

61) (전국한우경진대회) 농협 주관, '69년부터 시행,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한국종축개량협회 및 전국한우협회 주관, '93년부터 시행

62)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제시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26
